

연구간접비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비용이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모든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장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
 -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다. 연구개발준비금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비용
 - 나. 사업단·연구단운영비
 - 다.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마. 연구보안관리비
 - 바. 연구윤리활동비
 - 사. 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 가. 과학문화활동비
 -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가솔창업 출연·출자금 등

4. 기타지원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직무수행경비는 [별표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23.1.1.>

제5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연구비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장 간접비의 징수 <개정2017.6.1.>

제6조(간접비의 징수대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20.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간접비의 징수율)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연구비 관리 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율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삭제2017.6.1.>

제4장 간접비 예산의 편성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단장은 간접비 예산을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예산은 전년도 간접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간접비예산안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확정한다.<개정2017.4.1.>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단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단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간접비 예산의 집행

제12조(간접비의 집행) ① 단장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간접비 예산 범위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한다.

②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계담당직원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편성 범위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간접비의 청구 및 지출) ① 회계담당직원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액 범위에의 포함 여부와, 예산 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 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직원은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금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간접비의 이월) ① 단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입한다.

제15조(관련 서류의 관리) ① 간접비 청구 및 지급 관련 모든 회계 서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한다.

② 간접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 검수) 간접비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개정2015.2.24.,2017.4.1>

제6장 간접비의 결산

제17조(간접비의 결산) ① 단장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4.1>

② 단장은 간접비 결산내역이 포함되어 확정된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접비 예산과목 적용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지침은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침의 준용)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21.3.23.>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문개정2017.6.1.>

간접비 수익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산학협력 간접비 수익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 수익
지원금 간접비 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 수익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별표2] <전문개정'2017.6.1., 개정'19.10.2., '20.4.1., 개정23.1.1.>

간접비 지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인력 지원 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급여
		지원인력 상여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상여금
		지원인력 제수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 퇴직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일용직 임금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개발 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연구 지원 비	기관공통 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각종행사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포함) 등(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서명지 첨부)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감정평가, 회계감사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화료, 택배비, 제세 등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수행경비, 연구지원 직책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인쇄 및 유인물비, 기타운영비

항	목	세목	과목해설
		배상금 등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기간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기타 자산 지출	장기대여금, 지급 보증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구입을 위한 지출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 및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 활용 지원 비	과학문화 활동비	과학문화 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 지원 비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기타의 지원비

[별표3] <신설'23.1.1., '23.2.14.>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산학협력단장	月1,000,000원	※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음.
산학협력단 부단장	月500,000원	
의료기술협력단장	月500,000원	
산학협력정보담당관	月400,000원	
팀장	月400,000원	